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4일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4월 2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과 의안 발의 활성화 및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규칙의 목적(안 제1조)
- 개의·휴회·회기·선포·의사일정 등(안 제2조 ~ 제8조)
- 의안 및 동의(안 제9조 ~ 제22조)
- 발언 및 표결, 회의록(안 제23조 ~ 제44조)
- 위원회 및 예산안과 결산심사(안 제45조 ~ 제66조)
- 징계 및 보칙(안 제67조 ~ 제7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명 수정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) 규칙의 목적(안 제1조)
- 나) 개의·휴회·회기·선포·의사일정 등(안 제2조 ~ 제8조)
- 다) 의안 및 동의(안 제9조 ~ 제22조)
- 라) 발언 및 표결, 회의록(안 제23조 ~ 제44조)
- 마) 위원회 및 예산안과 결산심사(안 제45조 ~ 제66조)
- 바) 징계 및 보칙(안 제67조 ~ 제76조)

#### 3) 검토 의견

- 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상과 같이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, 법령위반사항이 없으므로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